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제1차 이사회 의록(정기)

1. 회의통지일자 : 등기발송 2022년 2월 4일(금)
2. 회의 일시 : 2022년 2월 15일(화) (11시 00분)
3. 회의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랑동 1319(대저1동) 본법인 사무실
4. 재적 이사 : 7명
5. 참석 이사(7명) : 대표이사 신 수, 임이사 김 호, 주 이 사 조 체, 이 사 이 영
6. 심의 안건 :
 - ①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신규 임용의 건
 - ②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재임용의 건
 - ③ 부산해원학교 이 삼교사 정년퇴직의 건
 - ④ 부산해원학교 이 정교사 질병휴직의 건
 - ⑤ 부산해원학교 김 교사 육아휴직의 건
 - ⑥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심의의 건(신규임용 및 휴직 대체)
 - ⑦ 2021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⑧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⑨ 2021년도 법인 및 각 기관별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의결의 건
 - ⑩ 임기 만료 이사 선임의 건
 - ⑪ 정관변경의 건(법개정에 따른 변경 및 임기 만료 이사 선임의 건)

※기타토의 사항 및 법인 현안 사항

7. 회의내용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정기) 개최함에 있어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재적이사 7명중 이사 7명, 참석하여 본법인 정관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상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그리고, 전차회의록(2021년 7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낭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2021년 12월27일(월)에 개최한 2021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전차 회의록 내용중 이의가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전 원
“이의 없습니다.”로 전원 찬동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하다. 2021년도 법인과 산하기관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감사보고 안전을 상정하고 김 결 감사를 대신하여 김 호상임이사에 게 보고를 요청하다.

감임이사 : 김 호

본인은 지난 2022년2월10일 배데스다 법인 사무실에서 2021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 유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법체)의 2021.01.01.부터 2021.12.31.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영문전행 내용과 법인 일반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회계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미흡한 사례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기에 그 내용은 별임과 같이 보고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 P2~P9 를 활용하여 보고하다.>

이 사 : 황 영

감사 진행에 대한 미흡한 사례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기에 원안대로 접수하기를 동의하다.

이 사 : 조 제, 이 주, 서 희, 이 욱, 신 수, 김 호

황 영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황 영 이사의 동의와 조 제, 이 주, 서 희, 이 욱,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승인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021년도 법인 및 산하기관 회계 감사보고서가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감사보고서를 마쳤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 법인과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인

- ①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신규 임용의 건
 - ②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재임용의 건
 - ③ 부산해원학교 이 섬교사 정년퇴직의 건
 - ④ 부산해원학교 이 섬교사 질병휴직의 건
 - ⑤ 부산해원학교 김 교사 육아휴직의 건
 - ⑥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심의의 건(신규임용 및 휴직 대체)
 - ⑦ 2021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⑧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⑨ 2021년도 법인 및 각 기관별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의결의 건
 - ⑩ 임기 만료 이사 선임의 건
- ⑪ 정관변경의 건(법개정이 따른 변경 및 임기 만료 이사 선임의 건)
외에 이사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서 희

부의 안건 외에 안건이 없어 원안대로 접수하기를 동의하다.

이 사 : 황 영, 조 제, 이 주, 이 욱, 신 수, 김 호

서 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서 희 이사의 동의와 황 영, 조 제, 이 주, 이 욱,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에 제출한 부의 안건중

① 2021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신규 임용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상임이사 : 김치호

먼저, ①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신규 임용의 건으로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신규 채용 전형 결과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각종 조희결과와 학교장 제청에 따라 중등기간제 김, 박, 초등기간제 이, 이, 김, 강, 을 2022년3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임용하기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2016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 편람, 별제2021-89(2021.12.14.), 별제2021-94(2021.12.29.), 부산해원학교-618(2022.2.4.) 본법인 정관 제4장 제26조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D22-003) 및 제안설명서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호 의안인 기간제교원 신규임용의 건은 선발의 절차는 교육청에서 규정된 범주에 따라 서류심사 및 학교의 인사위원회 심의, 공채수업, 면담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직장에 대한 보장의 불확실성으로 지원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회의 경우 중등은 2명 모집에 지원자가 2명이었고, 초등은 4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제1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신규 임용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이, 옥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신규 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김, 박, 이, 이, 김, 강, 을 2022년3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임용하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조, 제, 서, 회, 황, 영, 아, 주, 신, 수, 김, 호

이 옥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이 옥 이사의 동의와 조, 제, 서, 회, 황, 영, 아, 주, 신, 수, 김, 호 이사의 제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강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1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신규 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2호 안건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계약기간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2021학년도 계약 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학교장 제청에 따라 중등 기간제 인, 이, 김, 강, 진, 초등 기간제 권, 천, 을 2022년3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1년 채용하기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4조의4제5항, 별제2022-7(2022.1.26.), 2016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 편람, 부산해원학교-619(2022.2.4.), 본법인 정관 제4장 제26조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D14-P15) 및 제안설명서 2021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제2호 의안인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의 건은 기존의 기간제교사는 1년을 기준으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합니다. 2학기말에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신학기초에 이사회를 거쳐 계약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15%전후를 기간제로 뽑으므로 학생들의 인원조정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호 의안의 해당자는 기존의 기간제 교사인 인, 외 6인이며, 우리 학교는 현재 12명의 기간제 교사를 두고 있음을 설명하다.

제2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이 주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용의 건은 원안대로 중등 기간제 인 , 이 , 김 ,
 김 , 기 , 초등 기간제 권 , 전. 을 2022년5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임용하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조 제, 서 회, 황 영, 이 옥, 사 수, 김 호
 이. 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이. 주 이사의 동의와 조 제, 서 회, 황 영, 이 옥,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전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2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용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3호 안건인 부산해원학교 이 협교사 정년퇴직의 건을 강정하고 재인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부산해원학교 이 협교사의 정년(만62세) 도래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 인사발령함을 본법인
 정관 제7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근거 설명함.<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P16-P17)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소속	직위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재직기간
부산해원학교	교사	이 섭	특수중등(국어)		2022. 2. 28.	(26년11개월)

이 사 : 이 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서 회, 조 제, 이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이. 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이 옥 이사의 동의와 서 회, 조 제, 이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전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3호 의안인 부산해원학교 이 협교사
 정년퇴직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4호 안건인 부산해원학교 이 협교사 질병 휴직의 건을 상정하고 재인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부산해원학교 이 협교사의 질병휴직신청에 따른 질병휴직 심의하여 본법인 정관 제7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의 질병휴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설명함.<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P18-P19)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소속	직위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사유	휴직기간
----	----	----	------	------	----	------

부산해원학교	교사	이	특수중등(체육)		질병	2022.3.1.~2022.4.30. (2개월)
--------	----	---	----------	--	----	-------------------------------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4호 안전인이 병선생의 질병휴직의 건은 인정 선생의 부인이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이 2명이 있는데 그중 한명이 지체장애로 막대한 치료비가 수반되어 강감히 힘든 와중에 의료보탈까지 적용되지 않자 본인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내에서도 모금활동이 벌어지고 방송국에서는 특집방송까지 편성하는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의료보탈이 적용되고 병원의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본인이 정신적으로 넘넘 힘든 과정을 겪어 병가로 휴직을 신청하게 됨을 설명하다.

이 사 : 이 .욱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서. 회, 조. 제, 이.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이 목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이 목 이사의 동의와 서 회, 조 제, 이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전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4호 의안인 부산해원학교 이 교사 질병휴직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5호 안전인 부산해원학교 : 교사 육아 휴직의 건을 강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부산해원학교 : 교사의 육아휴직신청에 따른 육아휴직건으로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사회복지법인 베네스다정관 제7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원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설명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D20-P21)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소속	직위	성명	담당과목	생년월일	휴직사유 (자녀성명)	휴직기간
부산해원학교	교사	김	초등특수		육아휴직 (김)	2022. 3. 1.~ 2023. 2. 28. (1년)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둔 교사가 육아 휴직을 신청한 건임을 설명하다.

이 사 : 이 .욱

육아 휴직의 사유 및 절차에 문제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서. 회, 조. 제, 이.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이 목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이 목 이사의 동의와 서 회, 조 제, 이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인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5호 인건인 부산해원학교 2 교사 육아 휴직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6호 인건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 심의의 건(신규 임용 및 휴직대체)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2022학년도 재임용 기간제 김- 교원의 재계약의사 철회로 인한 신규 채용 및 질병휴직 이 교원과 육아
휴직 : 교원의 대체 기간제교원 채용건으로 채용분야 및 인원은 중등교사 2명(특수사회와 특수체육), 초등
교사 1명임을 설명하다.<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P22-P23)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제6호호 인건은 위 오 섭선생님의 정년퇴임과 이 선생의 질병휴직건, 김 선생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교사의 채용건입니다.

이 사 : 조 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서근희, 오-욱, 오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조 체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조 체 이사의 동의와 서 회, 이 록, 이 주, 황 영,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 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인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6호 인건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 심의의 건(신규 임용 및 휴직 대체)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7호 의인인 2021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부산해원학교 각 정 실장에 게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부산해원학교 : 손 정실장
제7호 의인인 2021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각각 6,119,845,000원
으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세입 증액분 38,038,000원과 가결안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 2021학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부산해원 학교-467
(2022.1.26.), 본법인 정관 제4장(이사회)제26조(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P23-P25)을 활용하여 발표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부연설명을 드리면 매년 학교회제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되는데 운영의 변경사항은 호봉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되고, 운영비는 전년도의 예산 기준 및 국가직인 예산계획에 따라 교육청에서 사전에 정해 주는
금액으로 편성합니다. 공사나 긴급사항등은 특정목적사업비라 하여 수시로 지원받으며 추가경정예산등에서 처리
하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전년말부터 교육청과 총괄회 협의하여 사업비에 대하여 내락하고 이사회를 거쳐
예산안을 교육청에 제출하면 최종승인을 받게 됩니다.
제7호 의인인 2021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황 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이근주, 조 체, 서 회, 이 록, 신 수, 김 호
황 영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황 영 이사의 동의와 이 주, 조 세, 서 희, 이 옥,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7호 의안인 2021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세입·세출 각각 6,119,845,000원으로 원안의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8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부산해원학교 : 손 정실장

제8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각각 9,404,219,000원으로 세입내역과 세출내역, 예산총칙에 대해 이사회회의자료집 세부내역을 참고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사학기관 2022학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부산해원학교-4468(2022.1.26.), 본법인 정관 제4장(이사회)제26조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다.<주요 내용을 회의자료(D27~p29)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2022학년도 학교예산은 우리 법인의 숙원사업인 다목적강당중축비 54억여원과 교사전체 스프링클러설치예산 5억6천여만원이 포함되어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40여 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가 부산해원학교 설립 50주년이므로서 연말까지 강당을 준공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고를 하였고 전주에는 지질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8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황 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조 제, 이 주, 서 희, 이 옥, 신 수, 김 호
황석영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황 영 이사의 동의와 조상제, 이 주, 서 희, 이 옥,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8호 의안인 2022학년도 부산해원학교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세입·세출 각각 9,404,219,000원으로 원안의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9호 의안인 2021년도 본법인 및 기관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2021년도 법인 및 각 기관별 사업 및 결산(안)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베네스다원 원장 : 김 호

2021년도 법인사무국 결산율 [회의자료P.30]와 같이 2021년도 예산보다 세입·세출이 5,759,877원이 감액된 376,240,123원으로 결산된 세부내역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이어서 베네스다원 주요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회의자료 P.31~P34]와 같이 2021년도 예산보다 세입·세출이 57,860,090원이 감액된 2,108,087,910원으로 결산된 세부내역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은송의집 원장 : 김 해

은송의집 주요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회의자료p35~p38]와 같이 2021년도 예산보다 세입·세출이 21,089,608원이 감액된 2,305,910,392원으로 결산된 세부내역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직업재활원 원장 : 박우준

직업재활원 주요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회의자료 p39~p40]와 같이 2021년도 예산보다 세입·세출이 39,273,063원이 감액된 733,342,063원으로 결산된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사회자 : 신남수(대표이사)

“지난 연말 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았고 필요서류를 수시로 구청 등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세입, 세출 결산등은 감사의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받아왔고 현재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내용은 감사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제9호 의안인 2021년도 본법인 및 기관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이환욱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조성재, 이금주, 서소희, 황석영, 신남수, 김철호

이환욱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회자 : 신남수(대표이사)

이환욱 이사의 동의와 조성재, 이금주, 서소희, 황석영, 신남수, 김철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9호 의안인 2021년도 본법인 및 기관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10호 의안인 임기만으로 인한 이 사() , 조 제이사() 재선임의 건입니다.

장임이사 : 김 호

이사 임기 만료 예정일이 2022년3월14일인 이 목이사, 조 제이사에 대해 세부내용을 제안서에 의거 설명하다. 본법인에서 결격사유 조항 회보(2022.2.9.) , 심법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회신, 범죄경력조회 회신(2022.2.9, 2022.2.14) 한 결과 “해당 없음”으로 통보받았음을 보고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D42~D43)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 7 1 9 (1 4

사회자 : 신 수(대표이사)

이 목이사님은 취임 후 지속적인 후원으로 법인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특히 세무전문가로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 제이사님의 경우에도 법률가로서 법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하시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청컨대 한번 더 함께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임기 만료 이사인 이 목, 조 제 이사의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있는지요? 없으면 동의 및 재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 황 영

이 사 이 목, 조 제 이사 후보자 재선임하는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이 주, 서 회, 신 남수, 김 호

황 영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황 영 이사의 동의와 이 주, 서 회,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전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임기 만료 예정자인 이 유, 조 제이사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제1호 의안인 정관변경의 건(법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임기 만료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 김 호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32조 개정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제62조 개정에 따른 변경과 본법인 이사 만료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정관변경사항임으로 재청이사 3분의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을 신수 대표로 정관변경안을 참조하여 설명하다.
<주요내용을 회의자료집(P45~P47) 및 제안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제1호 의안인 정관변경의 건은 교육청 범주 변경이고, 임기 만료 이사 재 선임에 대해 이미 있는지 문의하다.

이 사 : 이 주

다른 의견이 없으면 법개정에 따른 변경 및 임기 만료 이사 선임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 황 영, 서 회, 신 수, 김 호

이 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이 주 이사의 동의와 황 영, 서 회, 신 수, 김 호 이사의 재청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가부를 묻다.

이 사 : 전원

“예” 로 전원 만장일치 찬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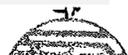
사 회 자 : 신 수(대표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상정된 안전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제12호 의안인 정관변경의 건(법개정에 따른 변경 및 임기 만료 이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됨을 선포하다.
다른 이의없음으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폐회선언하다.

2022년 2월 15일 (화) 11:50 폐회하다.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이사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본법인 정관 제30조2항에 의거 대표이사 및 참석한 이사·감사가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참석자 대표이사 신



신

주

상임이사 김

호

김



이사 조



조

이

이사 오



오

이사 이



이

주

이사 차



차



이사 황



황

영

1 9 () 1 4 7



본법인 이사회 의록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작성 및공개등) 및 사회복지사업시행령 제10조5항(회의록공개기간)에 의거 본법인 홈페이지(www.tbtsd.co.kr), 부산광역시 구청 복지행정 법인회의록공개(<http://www.bsgrangseo.go.kr>)에 공개되며 이록은 비공개로 게시됩니다.